

의안번호	2219403
의 퇴 인	최기상 의원
회 답 일	2026.6.5.
추계번호	26F2674
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체납자 강제징수를 위한 기관간 정보 공유 및 출국금지 기준 강화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3조의3(위탁받은 강제징수 등의 수행을 위한 협조 등)	○ 세관장이 강제징수 및 체납처분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, 국세청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납세자의 체납 현황, 납부능력 등 정보를 요청하기 위한 근거 마련 ○ 관세청장은 강제징수 및 체납처분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함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3조의3(위탁받은 강제징수 등의 수행을 위한 협조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은 세관장이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을 수행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납세자 정보를 요청하는 근거를 마련하고(안 제43조의3 제1항), 관세청장은 관할 세관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·설비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(안 제43조의3제3항).

- 「국세징수법」 제30조제1항¹⁾에 따라 위탁받은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 제39조의2제1항²⁾에 따라 위탁받은 수입물품에 대한

1) 「국세징수법」

제30조(고액·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) 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2) 「지방세징수법」

제39조의2(체납처분의 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·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체납처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해당 납세자의 체납현황, 납부능력 등 정보를 요청

[표 1] 현행 국세·지방세 체납자 강제징수 절차

구분	절차		비고
수입(특송)	① 통관 보류	② 압류 → ③ 자진납부(압류해제) or 매각 → ④ 송금	체납자 명의의 물품을 통관보류 후 담당 세무서·지자체에 체납현황을 재확인하고, 체납자가 수입물품에 상당하는 체납액을 ▲납부시 통관허용하며 수납한 체납액은 세무서·지자체에 송금, ▲납부하지 않는 경우 압류 후 매각 의뢰하여 매각대금을 세무서·지자체에 송금
휴대품	① 휴대품 검사		여행자승객명부 조회 후 담당 세무서·지자체에 체납현황을 재확인하고 검사지정, 검사하여 반입물품에 상당하는 체납액을 수납 또는 압류

자료: 관세청

- 개정안에 따른 재정 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시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강제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방식이 될지 또는 직제 개편을 통해 인력을 추가 활용하는 형태가 될지 여부 등을 예상할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비용을 추계하기 곤란함.
- 참고로, 관세청에 따르면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는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업무의 대상이 되는 국세·지방세 고액·상습 체납자는 매년 증가 추세임
 - 2025년 기준 체납자는 약 9.1만명, 체납액은 61조 7천억원 수준

[표 2] 연도별 국세·지방세 체납자 현황

구분	체납자(만명) (체납액(억원))			2023년 대비 체납자 증가율(%)		
	국세	지방세	계	국세	지방세	계
2023년	3.0 (440,755)	2.7 (12,284)	5.7 (453,039)	—	—	—
2024년	3.7 (511,390)	3.6 (17,548)	7.3 (528,938)	23	33	28
2025년	4.6 (595,484)	4.5 (21,828)	9.1 (617,312)	53	67	60

자료: 관세청

- 인천공항 입국자 기준, 국세 체납자 입국은 '23년 대비 '25년 30% 증가, 지방세 체납자 입국은 34% 증가하였으며 여행자 휴대품 검사율은 10% 수준임

[표 3] 인천공항 여행자 휴대품 및 수입(특송)물품 압류·징수 현황

구분 (체납 유형)		여행자 휴대품				수입(특송)물품			
		입국* (명)	검사 (명)	검사율 (%)	징수액** (백만)	통관보류 (건)	압류 (건)	징수** (건)	징수액** (백만)
내국 세	'23.	5,484	594	10.8	10	660	30	97	43
	'24.	6,837	625	9.1	5	972	28	138	45
	'25.	7,126	667	9.4	13	1,449	84	134	52
	평균	6,482	629	9.8	9	1,027	47	123	47
지방 세	'23.	1,840	114	6.2	8	259	8	40	19
	'24.	2,903	195	6.7	1	501	11	61	24
	'25.	2,468	184	7.5	4	556	22	47	17
	평균	2,404	164	6.8	4	439	14	49	20

* 국세 체납자 입국은 '23년 대비 '25년 30% 증가, 지방세 체납자 입국은 34% 증가

** 압류·매각 대금 충당, 압류 전(후) 납부를 통해 징수한 건수(금액) 기준

자료: 관세청

- 한편, 개정안 제116조의5는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 요청 대상 체납자의 체납 기준액을 5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, 체납 기준액 강화는 재정 추가 부담을 수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.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김주현	백경엽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주현	02-6788-4836	kjh@assembly.go.kr